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천경렬 소유물건(2024타경114785)

의뢰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서번호 : GD04-241023-301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충남지사

TEL. 041-555-2444

FAX. 0505-182-4448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원웅

(인)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충남지사 지사장 김원웅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사역사천오백만원정(₩445,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천경렬 (2024타경114785)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0.30	2024.10.30	2024.11.0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	445,000,000
	합계					₩445,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김민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청당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아파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2024타경114785)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감정평가 관계법규 및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시장가치를 평가하되,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4.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본건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을 실지조사 하였으며 조사는 2024년 10월 3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건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가격종류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계획의 수립 ■ 실지조사 계획의 수립 ■ 가격조사계획의 수립
3. 대상 물건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사항 확인 ■ 권리상태의 확인 ■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4. 자료수집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은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한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탐문조사, 관련 공부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업무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는바, 업무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40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118]		
건물명칭 및 주용도	아파트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사용승인일	2007.09.2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건물연면적	15,984.635㎡
전체층수	지하 1층 / 지상 15층	규모	120세대
물건내역	층·호수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1	제103동 제6층 제608호	143.308	72.20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거래사례의 선택

가. 거래사례의 내역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성 높은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 시점	비 고
1	동남구 청당동 4**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4동	3층/ 3**호	117.881	353,000,000	2,994,545	2024. 08.24.	-
2	동남구 청당동 4**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5동	15층/ 15**호	117.881	387,000,000	3,282,972	2024. 03.14.	-
3	동남구 청당동 4**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3동	8층/ 8**호	143.308	490,000,000	3,419,209	2023. 09.04.	-

※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거래사례의 선택

상기 거래사례는 본건 구분건물과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건물에 소재하는 거래 사례로서 비교성이 높으며 그 중에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근접하여 비교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1>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 사정보정

상기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보정은 불필요합니다.

사정보정률	1.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 1) 지 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2) 가격지수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3) 기준시점 : 2024. 10. 30. (거래시점 : 2024. 08. 24.)
- 4) 시점수정치

지역·용도	가격변동률	계 산 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0.99801 (0.199% 감소)	아파트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24.08.24~24.10.30) 거래시점 : 2024.08.24. 2024년 07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4.10.30. 2024년 09월 지수를 적용함 2024.08.2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 07월) : 100.6 2024.10.3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 09월) : 100.4 시점수정치 : $100.4/100.6 \approx 0.998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개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외부적 요인(토지요인)과 ②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요인으로 구성되며 ③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서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개별적 요인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통로구조, 주차의 편리성 등	
개별적 요인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 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

- 본건 기호 '1'

가치형성요인		격 차 율		
요 인	조 건	대 상 '1'	사 례 '1'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1.00	상호 유사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상호 유사합니다.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 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주차의 편리성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1.04	1.00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합니다.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 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상호 유사합니다.
누 계		1.040	1.000	본건 / 사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시산가액의 결정

가. 단가의 결정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결정단가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994,545	1.000	0.99801	1.040	3,108,129	3,108,129

나. 총액의 결정

일련 번호	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시산가액 (원)	결정가액 (원)	비고
1	3,108,129	143.308	445,419,751	445,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1) 평가사례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m ²)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m ²)	기준 시점	평가 목적
1	동남구 청당동 4**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1동	10층/ 10**호	143.308	492,000,000	3,433,165	2023. 11.09.	경매
2	동남구 청당동 4**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7동	5층/ 5**호	117.881	430,000,000	3,647,746	2023. 07.22.	경매

※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자료

통계 기간	소재지	물건용도	경매 건수	매각 건수	매각율	매각 가율
2023.11. ~ 2024.1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286	101	35.3%	80.2%

※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 정보

3) 합리성 검토

상기 평가사례와 거래사례는 유사한 가격수준이고 근래 본건이 속한 지역의 거래 수요,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자료, 본건의 관리상태 등의 내부요인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산정단가는 적절한 가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결정가액 (원)	비고
1	동남구 청당동 440 청당마을 벽산블루밍 아파트	제103동 제6층 제608호	143.308	72.202	445,000,000	비준가액
합 계					445,00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445,000,000원

나.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평가에 있어서 산정된 시산가격을 평가사례, 인근지역에 형성된 가격수준, 실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절한 평가액이라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청당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사라브지붕 15층 건내, 제6층 제6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9.28.)

외벽 : 일부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방, 주방, 화장실, 거실 등)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시설 및 E/V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와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벽산블루밍아파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능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청당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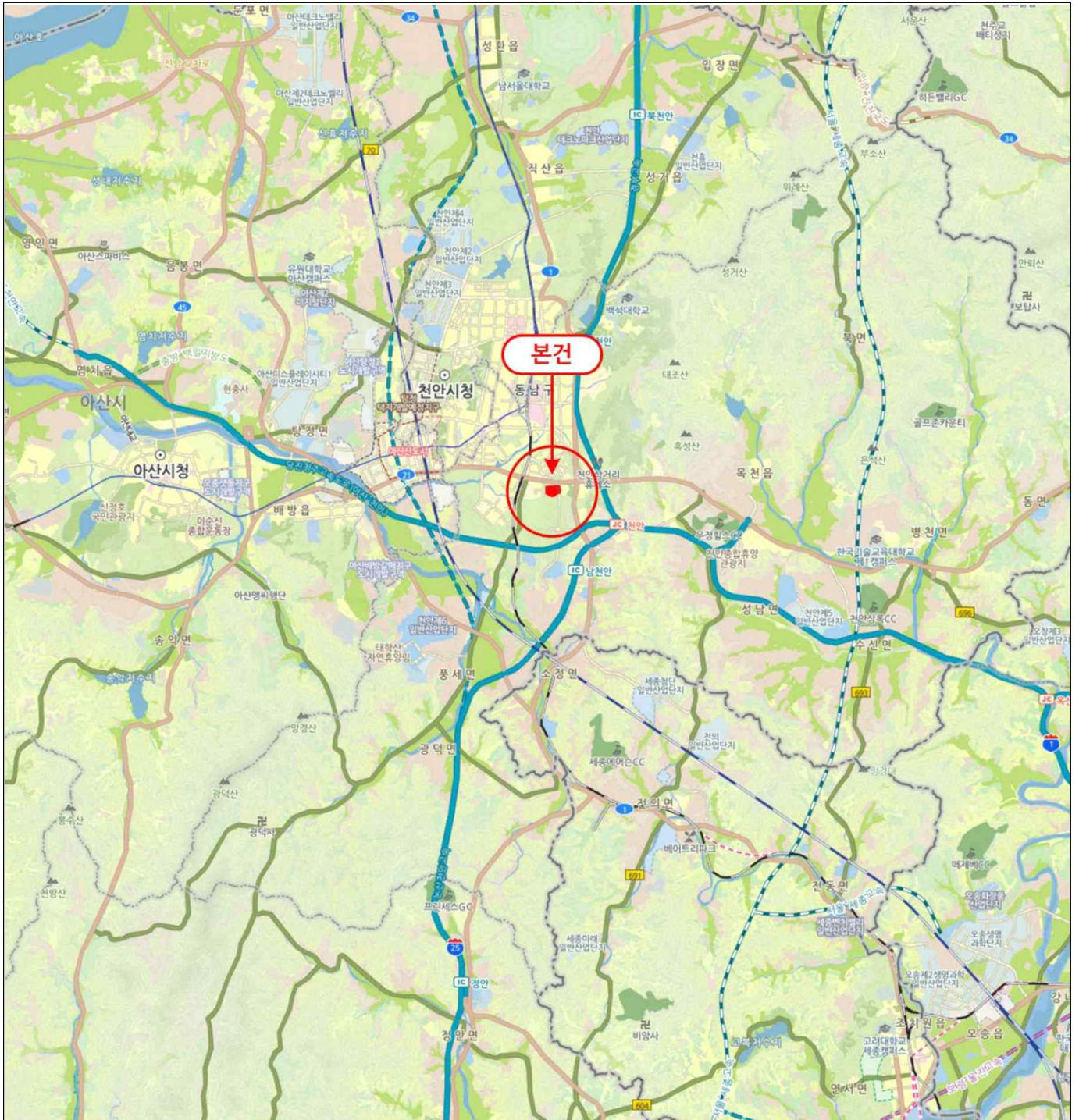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40 청당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제103동 제6층 제608호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위 치 도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40 청당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제103동 제6층 제608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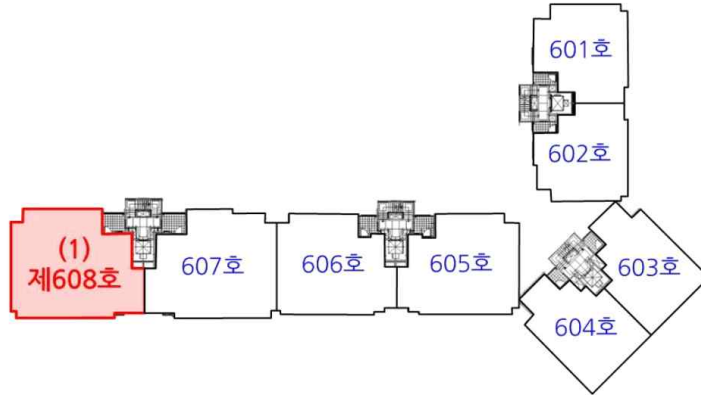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40 청당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제103동 제6층 제6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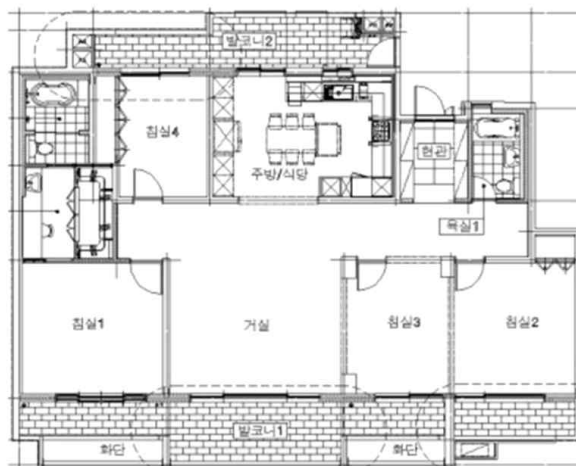
4
No Scale

【 호별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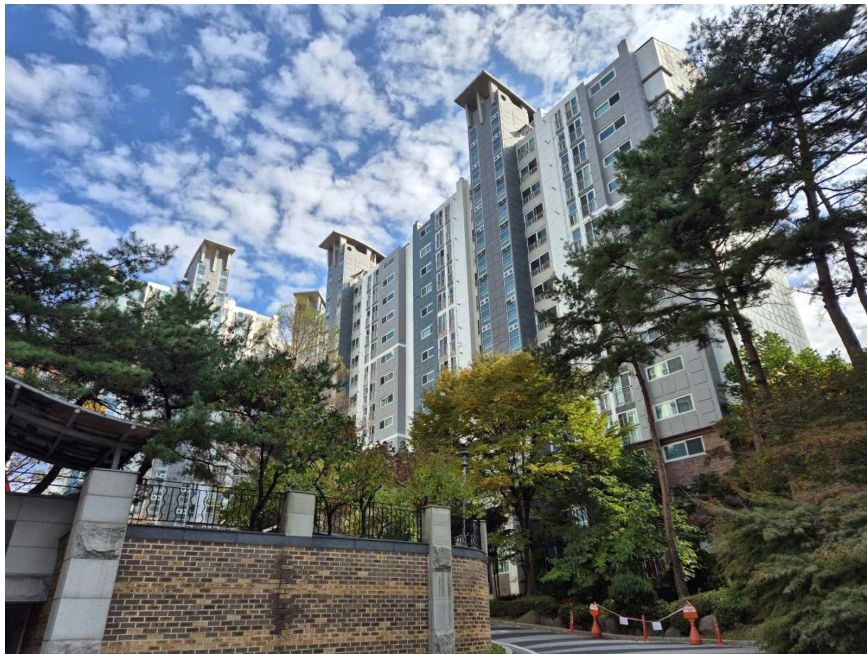
【 청당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제103동 제6층 】

【 내부구조도 】



【 (1) 제6층 제608호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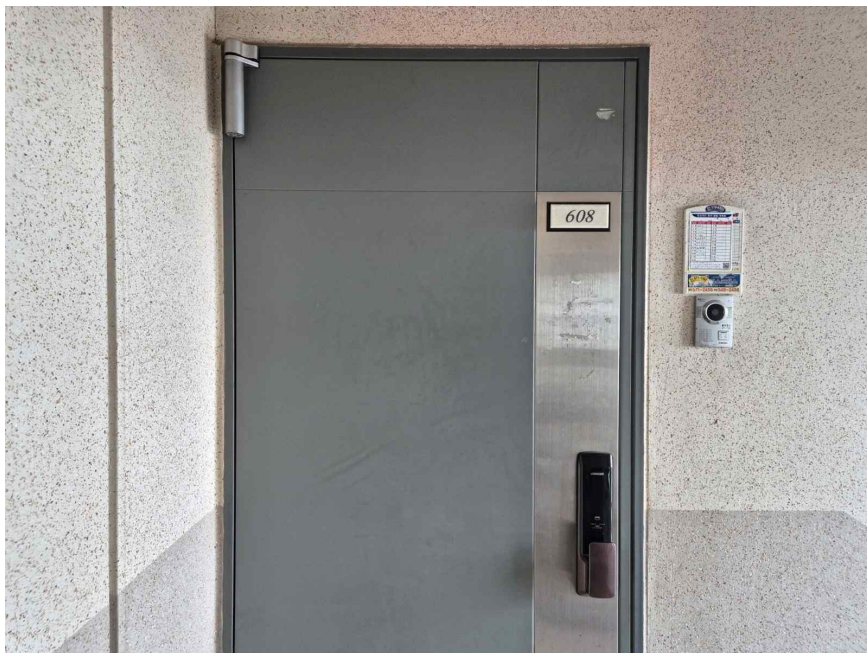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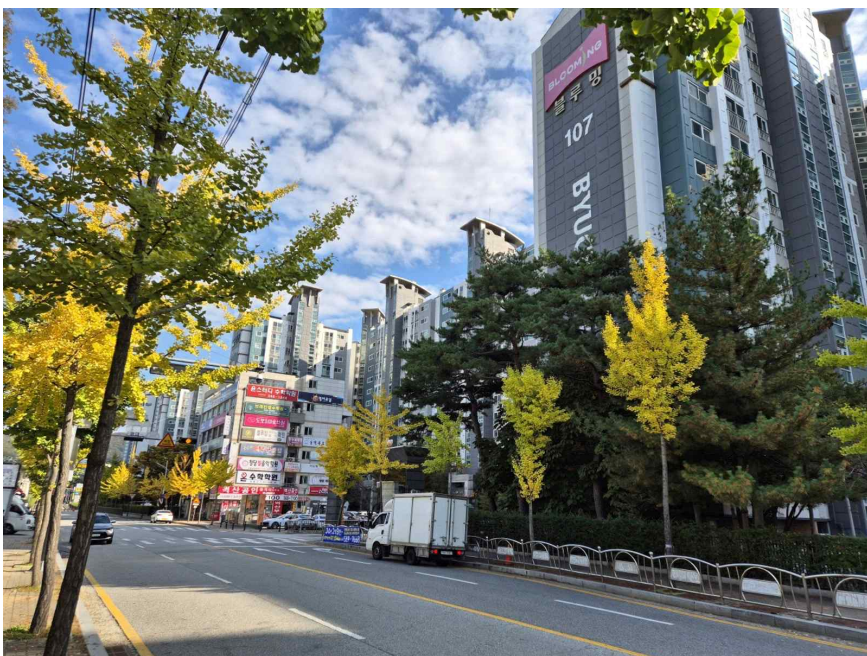


103동 출입구

사 진 용 지



본건 출입구



주위 환경